

교육과정연계 운영규정

제정 : 1998.08.01
개정 : 1998.05.01
개정 : 1999.10.18
개정 : 2008.12.17
개정 : 2011.11.22
개정 : 2014.11.01
개정 : 2020.03.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3.10.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와 실업계고등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직업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고등직업 교육의 내실화에 의한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1998.05.01., 1999.10.18., 2008.12.17., 2011.11.22., 2020.03.01., 2021.12.01.>

제2조(대상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 대상학과는 본 대학교의 계열 및 학과의 전공코스과 고등학교 학과의 특성화 방향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연계운영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0.03.01.>

제2장 교육과정 연계운영 위원회

제3조(구성) ①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본 대학교 교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고교 교장이 추천하는 1인을 당 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본 대학교 총장 및 고교 교장이 추천하는 학교별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1.12.01., 2023.10.16>

③ 원활한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연계운영과목에 관한 사항
2. 교원상호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실험·실습시설 및 기타 학교시설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강좌개설 및 학점인정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6. 공동교재개발 및 공동작품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연계운영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본 대학교 신입생 선발 계획 심의 <개정 1998.05.01., 1999.10.18., 2008.12.17., 2011.11.22., 2020.03.01.>
8. 기타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21.12.01.>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01.>

제3장 학 사

제6조(학점인정) ①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약교간의 학점인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계교간 학점인정과목은 연계교과의 이수과목 중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본 대학교 개설과목의 수강에 따른 학점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0.03.01.>

③ 제2항의 수강신청은 수강학기 1개월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성적평가는 본 대학교의 PASS 학점(불계)으로 인정한다. <개정 1998.05.01., 1999.10.18., 2008.12.17., 2011.11.22., 2020.03.01.>

제7조(시설사용) ①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약교(이하 “협약교”라 칭한다.) 간에 상호 보완적인 시설을 공동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의 방지, 연계교육의 목적 달성을 꾀한다. <개정 2021.12.01.>

② 제1항의 협약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2주 전까지 협약교에 문서로 통보하며, 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③ 제2항의 시설 사용승인은 시설사용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④ 시설을 보유한 학교에서는 시설을 사용하는 협약교의 교원 및 학생에게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01.>

제8조(시설사용에 따른 학생지도) ① 시설사용시 파견된 학생의 지도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책임 지도하며, 시설 사용 기간동안 실습보험에 가입된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실습보험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② 시설사용을 협약교 상호간 중복 사용하는 경우 학생의 지도감독은 학생소속 교원이 담당한다. <개정 2021.12.01.>

제4장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약서

제9조(교육과정 연계운영 협약서) 본 대학교와 고등학교간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별첨1)는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0. 03.01., 2021.12.01.>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약서

대원대학교와 _____ 사이에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조(목적) 대학교와 고등학교간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실업고의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 대학교의 이론 및 응용능력, 실무실기 교육 등 학교 기능별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단계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대상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 대상학과는 대학교의 계열 및 학과의 전공코스와 고등 학교 학과의 특성화 방향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연계운영 위원회에서 선정 한다.

제3조(교육과정 연계운영 위원회)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운영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구성 시기 및 조직에 대하여는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해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시행 안을 작성한 후, 각 소속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5조(운영) 다음 각 호의 연계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 및 고등학교장의 협의하에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교원 상호지원
2. 실험·실습 시설 공동 활용
3. 필요강좌 상호 수강 및 학점 인정
4. 공동 교재 개발
5.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제6조(대학교 입학생 선발) ①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의한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대학교 신입생 선발시 일정 인원을 배정하여 우선 선발한다.

② 제1항의 학생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2항의 입학전형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계획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 대학교입학생 선발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 원 대 학 교

총장

고 등 학 교

교장

[별첨 2]

연계교육 이수자 우선선발 계약서

대원대학교(이하 “대학교” 이라 칭한다.)과 _____ (이하 “고등학교” 라 칭한다.) 사이에 연계교육 이수자의 우선선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대학교와 고등학교간 연계교육 이수자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기준)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우선선발은 학교장 추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정한다.

1. 연계교육 이수자 중 참여도(출석)가 높은 학생
2. 자격증 취득자
3. 전과목 성적 우수자

제3조(대상인원) 연계교육 이수자 우선선발 대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연계 학과명	대학교 입학정원	고등학교 연계 학과명	연계교육 대상 학생수		우선선발 계약 학생수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계		()개 학과				

제4조(우선선발시기) ① 연계교육 이수자의 우선선발 계약은 고등학생의 2학년 진급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우선선발 계약 학생수는 매년 연계교육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에 결정한다.

부 칙

본 계약에 의한 연계교육이수자 우선선발은 20____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20 . . .

대 원 대 학 교

총장

고 등 학 교

교장
